

# 대외채권추심대행 약관

제 정 : 2004. 1. 2  
1차개정 : 2007.11.29  
2차개정 : 2010. 7. 6  
3차개정 : 2021. 4. 1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대외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입니다.

**제 2 조(적용대상채권)** ① 이 약관은 변제기일이 경과된 대외채권 중 미화 5천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회수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채권자”란 수출자,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기타 대외거래”란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의 수입, 해외투자 및 그 밖에 공사가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인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대외채권”이란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채권추심대행계약”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추심을 공사에게 위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추심수수료 등”이란 채권추심 위임관계가 성립된 이후 대외채권의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가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 제 2 장 채권추심 위임관계

**제 4 조(채권추심대행계약의 성립)** ① 채권추심대행계약은 공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공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채권추심위임장
2. 위임대상 채권의 명세서 및 관련서류 사본(필요시 원본)
3. 채권 발생경위 및 채무자에 대한 기본 자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공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② 공사에 대한 서류제출은 인터넷 또는 서면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이 약관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채권추심대행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공사의 채권추심대행계약 승낙은 채권자의 서류제출방법(인터넷 또는 서면방법)에 따르며, 승낙통지를 발송한 시점부터 채권추심대행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가지게 된 모든 채권 관련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채권추심대행계약의 해지)** ①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채권추심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이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추심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 취지 전부에 대하여 패소하는 등 집행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5. 채무자가 파산 또는 사망하여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채권자가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의 회신을 하지 않아 추심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추심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가.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 나. 채무자의 소재가 1년 이상 파악되지 않는 경우
- 다. 채권자가 추심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라. 채권자가 휴폐업한 경우
- 마. 소송 이외의 채권추심방안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공사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그 해지통지 사유가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채권자는 공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추심성공과 관계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채권자가 추심의 종결 전에 채권추심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및 해외현지추심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채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공사가 추심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추심위임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추심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중복위임의 금지 등)** ① 채권자는 본 약관에 따라 공사에 추심을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이 종결되기 전에는 제3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채권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채권추심대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채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공사가 추심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추심대행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추심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 3 장 추심업무의 수행 및 종결

**제 7 조(추심업무 수행방법)** ① 공사는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하여 공사가 직접 추심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국내외 유관기관, 외국소

재 채권추심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신용·재산조사
  2. 전신, 전화, 서면 또는 면담 등에 의한 변제 촉구
  3. 변제조건에 대한 협상
  4. 채무자와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체결
  5. 변제금 수령
  6.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진행
  7. 기타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부대활동 등
- 단, 추심관련 서류번역은 제외

③ 공사는 채권추심업무의 주요 진행사항을 공사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면(e-mail포함)으로 통지하여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산서비스의 장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의뢰받은 채권의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8 조(채권자 통지사항)**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위임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발견, 채무변제 의사확인, 연락처 변경 등 채권회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이 약관에 따라 공사에 위임한 채권이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채권자의 주소(e-mail 주소 포함), 상호, 전화번호, FAX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9 조(채권자 사전동의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수출의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하거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채권의 분할상환과 채권금액감액이 필요한 경우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4. 채권추심업무 수행상 통상적비용(우편료, 전화료, 시내출장비등) 이외의 경비가 발생할 경우
5. 기타 공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발생 시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권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채권추심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④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구받는 경우에 10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추심업무의 종결)** 채권추심대행계약에 따라 위임된 채권액 전액을 회수하거나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심업무가 종결됩니다.

## 제 4 장 채권의 회수 및 추심수수료 등

**제 11 조(회수금 처리방법)** ①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공사가 채무자 또는 추심위임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② 공사가 회수금액을 직접 수령한 경우, 공사는 추심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회수금처리 내역을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13조에서 정하는 추심수수료 등과 채권자가 이 약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채권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게 제13조에서 정하는 추심수수료 등과 채권자가 이 약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사에 납부할 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그 금액을 확인해 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12 조(회수금액 간주)** 채권추심위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가 추심에 성공하여 회수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3. 채권자가 채무자 등의 변제공탁으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4. 채권자가 강제집행, 임의경매, 배당참가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한 경우
5. 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채무자와 경계계약, 채권채무의 상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기 및 감면 등으로 공사의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 등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 13 조(추심수수료 등)** ① 추심수수료 등은 채무자가 소재하는 국가, 회수금액, 추심의뢰 채권의 유형 등을 기초로 공사가 정합니다.

② 공사는 채권자로부터 요청받은 채권금액 중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추심수수료 등을 부과합니다.

③ 채무자로부터 수출상품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는 그 물품을 제3자 앞에 매각한 금액, 공인 감정기관 또는 공사와 채권자가 합의한 기관의 평가액을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④ 추심금액이 분할 상환되는 경우에 공사는 각 분할 회수금에 상응하는 추심수수료 등을 부과합니다.

⑤ 채권추심이 실패로 종결되거나 중도에 채권추심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등에는 공사가 채권자에게 비용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제 5 장 보 칩

**제 14 조(소멸시효의 관리)** ① 채권자는 소멸시효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공사와 채권추심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관리에 대해 공사는 별도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면책)** ① 채권자는 공사에 제출한 증서 또는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또는 공사의 직원이 아닌 대리인, 수탁자, 수입인, 기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 손상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공사의 요청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추심 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공사는 채권자에게 제공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오류나 누락 및 제공된 보고서와 정보를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입게 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의 지연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공사 직원 및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위임금액에 대한 추심수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범위에 공사가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추심기관의 직원 및 공사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은 대리인은 제외합니다.

**제 16 조(특약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

니다.

**제 17 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수한 날의 환율
2. 제1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3.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합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한 환율로 환산합니다.

② 외국통화일 경우 소수둘째미만을, 내국통화일 경우 10원미만을 단수절사 합니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① 공사는 채권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e-mail 주소 포함)로 서면(e-mail 포함)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는 이 약관에 의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봅니다.

**제 19 조(준거법령)** ① 공사는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채권추심 법령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